

국제표준화 회의동향

## CCITT SGⅢ 회의 참가보고 (스위스 제네바, '92. 9. 23~10. 2)

### 목 차

1. 회의의 일반개요
2. 회의의 세부내용
3. 회의참석결과 및 소감
4. 금후 회의일정 및 과제

### 구 현 모

CCITT 국내연구단 제3연구위원회 위원  
한국통신연구개발단 전임연구원



## 1. 회의의 일반 개요

높은 연구반이다.

### 가. 연구분야

SG III는 일반 요금 원칙과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의 과금 및 요금 계산을 연구하고 있는데 CCITT에서 유일하게 기술적 표준외에 경제적 법적측면의 규제(REGULATORY) 사항을 다루고 있는 연구반이다. 따라서 회원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른 만큼 규제측면이 강한 관련권고의 경우 제정, 개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CCITT내의 다른 연구반과는 달리 정부 대표가 사업자와 함께 참석하는 비율이

### 나. 위원회 체재

SG III은 7개의 WP(Working Party)와 5명의 특별 보고자 그리고 4개의 지역 요금 그룹으로 구성되어 관련 과제 및 지역 요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활동은 WP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비중이 적으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특별 보고자를 지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지역 요금 그룹은 각 지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요금 및 정산에 관한 원칙을 연구하고 있다.

### ○ 구성 현황

#### - 실무작업반(WP)

명칭	담당 과제	관련사항	의장
WP III/1	과제 1-3,5	국제전용선 이용제도, 요금	H.Heling
WP III/2	과제 4,23-25	국제전용선(디지털) 요금	J.O.Boyle
WP III/3	과제 6-8, 10-12	텔레스, 전보, 데이터전송	D.Casey
WP III/4	과제 6-18	국제전화 및 TV 전송 요금	J.Payman
WP III/5	과제 19-20	국제 위성, 해사 이동통신	W.Lucas
WP III/6	과제 21-22	ISDN의 요금원칙	E.J.Exton
WP III/7	과제 29	요금 핸드북의 작성	H.Traore

## -특별보고자-

과제번호	연 구 과 제	특별보고자
20,26,30	WATTC의 반영방법과 일반 요금 원칙 연구	송평환화(일)
9	이종 공중데이터망의 상호접속시 요금원칙	-
13	국제 공중 팩시밀리 서비스 요금 원칙	증산 성(일)
14	국제 텔리텍스 서비스의 요금원칙	W.Book(독)
15	비디오텍스의 요금 및 국제 정산원칙	P.Sibeta(프)
31	통신통계관련 C.1원고의 개정	

## -지역 요금 그룹-

명 칭	연 구 내 용	의 장
TAS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요금연구	N. Virata(필)
TEUREM	유럽, 지중해 지역의 요금연구	G. Repigi(프)
TAL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요금연구	
TAF	아프리카 지역의 요금연구	J. Kebede

## 다. 참가현황 및 제출된 문서

## -참가 현황-

참 가 국	참 석 자	참 가 국	참 석 자
독 일	1명	일 본	4명
벨 기 애	1명	캐 냐	1명
브 라 질	2명	말레이시아	2명
카 나 다	2명	뉴질랜드	1명
한 국	3명	오 만	2명
덴 마 크	1명	네덜란드	1명
스 폐 인	2명	영 국	2명
미 국	8명	러 시 아	2명
핀 란 드	1명	스 웨 덴	1명
프 랑 스	4명	체 코	1명
헝 가 리	1명	INTUG	1명
이탈리아	6명	합 계	50명

- 제출문서

문서 번호	제 목	제출자
지연기고문 D.87	Packet services in the ISDN	Chairman WP 6
지연기고문 D.88	Report of the meeting of experts, Lisbon, 29 June-3 July	Chairman WP6
지연기고문 D.89	Packet Switching in the ISDN	Chairman WP 6
지연기고문 D.90	Proposed amendment and additions to REC. D.xx	U.S.A

#### 라. 회의 일정 및 참석자

○기 간 : '92. 9.28-'92.10. 2(5일간)

### ○ 참석자 : 한국통신 임승만

## 한국통신 구현모

## 데 이 콤 김 기현

계의 정의에 비용과 경로를 포함키로 하였다.

○ 5.2.10과 6.2.2.2의 규정에서 정확한 정산 방법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추정 정산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에 동의하였다.

## 2. 회의의 세부 내용

### 가. WP III/3 회의

### 1) 권고안 D.XX의 개정 작업

O.D.XX는 91년 3월의 회의에서 메세지핸들링 서비스와 관련서비스의 일반 정원칙이 작성된 바 있다. 이 권고 초안에 대하여 몇가지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을 미국이 지연기고문 D.90을 발표하므로써 논의가 이루어졌다.

○ 5.4.8의 중계 규정에 관하여 두종류의 정산예를 삽입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제안에 의하여 죽

○ ADMD를 메세지의 주소에서 알수 없을 경우의 정산과 청산에 관한 원칙이 논의 되었는데 회의에서는 데이터를 PRMD의 위치에 저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비용의 보상을 위한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미배달 메세지가 요구될 경우 이 메세지는 다른 ADMD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한 경로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하나의 ADMD에 의하여 여러 국가로 MH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도 논의되었는데, 다국적 ADMD에 의한 범동 예상

비용은 ADMD간의 상호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 메세지의 크기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예를 들어 MH시스템에서의 음성 메세지, 또는 대용량 파일의 전송등인데, 이에 대한 결정에 앞서 SGVII의 의견을 물기로 하였다.

### 2) Store-and forward facsimile service (COMFAX)

○ COMFAX에 관한 권고안인 F.162과 F.163이 제2연구반에서 작성되었고 이 서비스의 정산 원칙으로 D.XX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대표는

COMFAX는 팩시밀리 서비스이므로 미배달의 경우 과금하지 않는 예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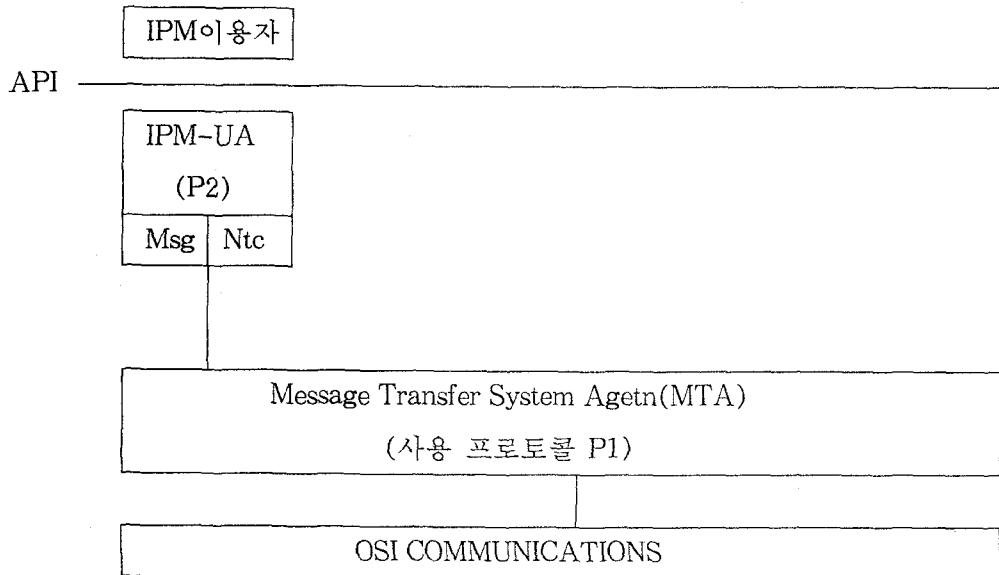
### 3) X.400발전에 관한 Tutorial

○ WP III/3의 의장인 Mr. Casey는 MH Service와 관련 서비스의 일반 정산 원칙인 D.XX의 수정작업에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X.400의 발전 과정에 관한 Tutorial을 발표하였다. CCITT X.400의 권고안의 발전을 1984년, 1988년 그리고 1990년의 Version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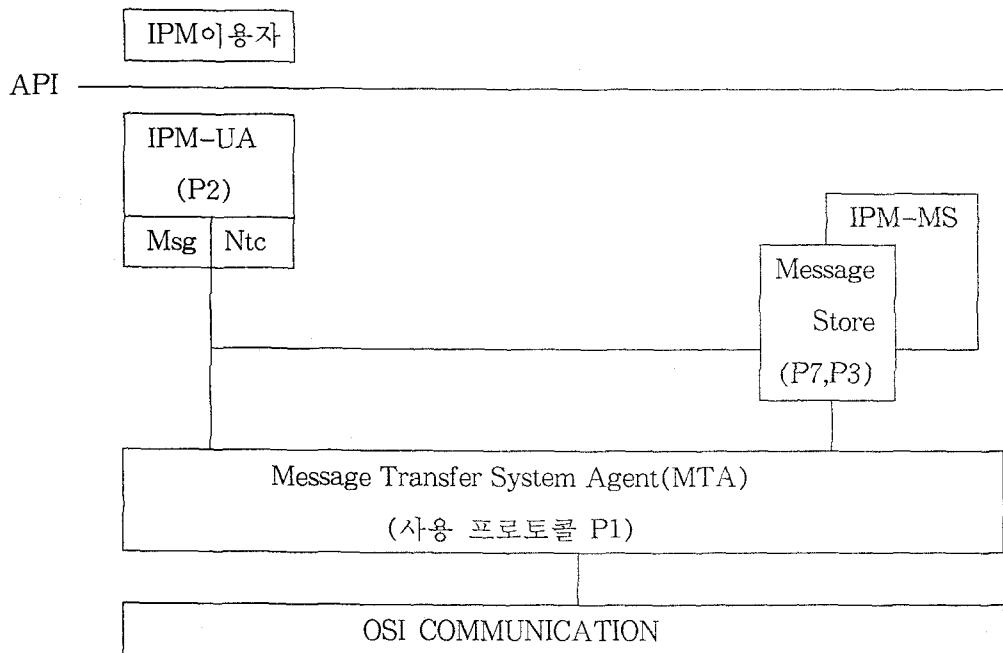
### ○ MHS-Architecture의 변화

	1984년	1988년	1990년
이용자	IPM	IPM	IPM, EDI
이용자 Agent	P2 Protocol	P2 Protocol	P2, P-edi
메세지 전달 Agent(MTA)	P1 Protocol	Enhanced P1	Enhanced P1
메세지 저장	없음	있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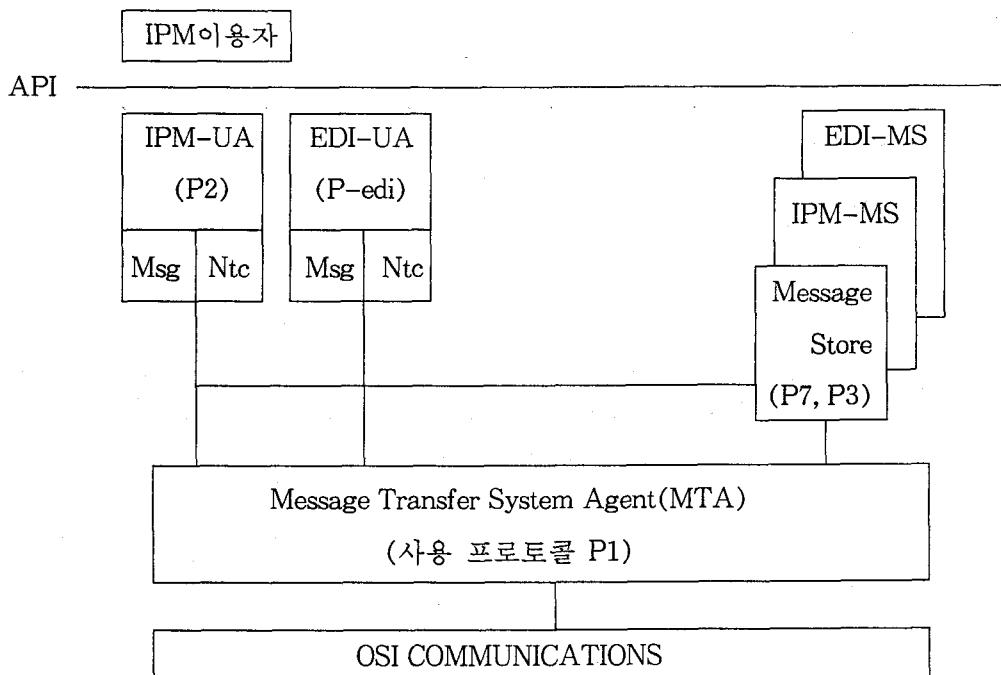
1984년 VERSION



1988년 VERSION



1990년 VERSION



## ○ Interpersonal Messaging Environment

	1984년	1988년	1990년
이용자	IPM user	IPM user, PDS 기타 Telematic	IPM, EDI GCM user
Interface	IPM-UA, Remote IPM-UA	IPM-UA, PDS-AU TELEMATIC-AU	IPM-UA, EDI-UA EDI-PDAU, GC-UA
메시지 전달 시스템	MTS	좌동	좌동

## 나. WP III/6 회의

## 1) 전문가회의 결과의 논의

○ WP III/6의 전문가 그룹은 지난 6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전문가회의를 가지고 D.210, D.232권고안에 대한 개정사항과 연락문서에 대한 응신으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D.210의 개정사항은 그동안의 3 연 구기간(12년) 동안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만들적에 사용된 몇가지 공통적인 근거를 정리하여 차후 연구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을 D.210의 별 첨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내용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이것이 잘 정리가 되었으나 D.210의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과 좀 더 융통성이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였다.

○ D.232(ISDN에서의 부가통신 서비스의 과금과 정산원칙에 관한 권고)의 개정 사항

#### - 회의통화의 과금과 정산원칙

최근의 서비스 규정의 변화는 회의 통화 요금을 가입비의 형태로 고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들면 자주 발생하는 회의 통화는 네트워크상에 저장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즉 이 경우 망 이용형태는 전용 이용형태로 가입비의 형태로 징수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D.232를 변경키로 하였다.

#### - 호완료 서비스의 과금과 정산 원칙

호완료서비스에 대한 과금 원칙을 D.232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나 논의 결

과 아직은 시기상조 인것으로 판단하여 다음회기에 다루도록 하였다.

#### - CALL DEFLECTION서비스의 과금과 정산 원칙

CALL DEFLECTION서비스는 CALL FORWARDING과 CALL TRANSFER서비스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과 동일한 과금과 정산 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 - 악의호 확인에 대한 과금과 정산 원칙

전문가 그룹은 악의호 확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명기하여 기존권고의 CLIP항에 첨가하여 CLIP와 동일한 과금과 정산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 호 송출 방지 서비스의 과금과 정산원칙

호송출방지 서비스의 과금원칙으로는 특정 망 이용 요소의 비용을 복구하기 위한 가입비와 토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망자원의 보상을 위한 시동비용의 형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정산과는 상관이 없는 서비스로 규정하여 D.232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 개인 번호 계획 서비스의 과금과 정산원칙

개인 번호 계획의 특성이 폐쇄이용자 그룹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것을 고려

하여 폐쇄이용자 그룹 서비스와 동일한 과금과 정산원칙을 적용키로 하였다.

#### - Sub-addressing서비스의 과금과 정산 원칙

Sub-addressing서비스의 설정과정이 직접 다이얼 인(DDI)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동일한 과금과 정산 원칙 즉 가입비 형태의 징수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어떤 사업자의 경우 매 호마다 이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여 Invocation Charge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 2) ISDN내에서의 패킷 스위칭

○ISDN내에서의 패킷 스위칭에 대한 지연 기고문 D.89가 제출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ISDN과 ISDN의 연동을 통한 패킷 통신, ISDN과 PSPDN과 연동을 통한 패킷 통신등 5가지의 경우를 다루었는데 각 경우에 대한 이견과 함께 이해의 부족으로 다음번회기에 정식 기고문으로 제출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 다. 기타사항

#### 1) 국제정산에 관한 권고안(D.140)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정부 수집

D.140은 지난 6월 회의에 초안이 구성되어 10월 1일을 기한으로 우편투표에 회부되었는데 우편투표 결과 36개국이 투표에 참가하여 7개국(한국 포함)이 반

대를 하고 29개국이 찬성을 하여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용지향의 정산요율, 비찰원칙, 공개원칙등이 정산 요율설정시 적용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들이 향후 5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촉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참가팀은 D.140의 투표 진행 사항과 각 국가들의 반대 또는 일부 유보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해당 부서와 체신부에 전달하였다.

#### 2) UPT에 관한 자료 협조 요청

본 회의에 이어 UPT에 관한 회의가 BT초청하에 영국 런던에서 이어서 열리었으나 참석치 못하게 되어 이 회의에 관한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해줄 것을 BT 대표에게 요청하였다.

### 3. 회의 참석 결과 및 소감

이번 회의는 중요한 논의 사항은 없었고 MH서비스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일반 정산 원칙에 관한 권고의 개정과 COMFAX 서비스의 과금원칙 그리고 ISDN의 일반 과금 원칙과 부가서비스의 과금원칙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의 참가자들은 MH 서비스의 과금과 정산에 있어서 중계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할것, COMFAX 서비스의 과금원칙이 MH서비스 과금 원칙 원용의 지지, ISDN일반 과금 원칙 적용시

각 국가별 요금 정책의 여지를 둘것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회의는 ISDN과 정보통신 분야의 과금과 정산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 분야의 경우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 권고안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4. 금후 회의 일정 및 과제

이번 회의는 제9차 연구회기(1988년-1992년)중의 마지막 회의이며 임시회의(Interim meeting)의 성격으로 열렸다. 금번 연구회기 동안에는 전용선 분야와 국제 전화의 정산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국제 전용선 이용제도와 과금 원칙에 관한 권고인 D.1 권리의 개정과 국제 전화 정산 요율의 적용 원칙에 관한 권고인 D.140의 적용이 그것이다. D.1 권고는 91년초에, D.140권고는 92년초에 논의가 끝나므로 해서 이번 회의는 커다란 생점이 없이 기술적인 검토를 위주로 한 회의이었다. 10차 연구 회기 동안에는 현재 보다는 줄어든 연구과제로 진행될 것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9차 연구회기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10차 연구회기의 첫번 회의는 93년 6월에 열릴 예정이며 9차 회기보다는 보다 많은 인원의 지속적인 참여로써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